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7. 22.(목) / 총 5매(본문4, 참고1)	
담당 부서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양종호, 서기관 김목진, 사무관 문채빈, 주무관 김경태, 허동혁 • ☎ (044) 201-3229, 4816, 4817, 4818	
보 도 일 시		2021년 7월 2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3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

-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... 91건 규제 개선 확정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가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
○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,

- 「'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(2.26)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*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, '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(위원장:1차관, 5.21)'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.

*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

□ 이에 따라,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*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,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.

* (공기업: 9개) 인천공항, 한국공항, LH, 도공, KORAIL, 부동산원, HUG, JDC, SR
(준정부기관: 6개) 교통안전공단, KAIA, 국토안전원, 철도공단, LX, 기계안전관리원

-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,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,
- 폐지 12건,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다.

□ 이번에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.

① (한국국토정보공사)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

- (현황)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 달성을 입찰·계약·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하여야 했다.
- (개선)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하여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.

② (한국교통안전공단)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

- (현황) 이륜자동차 제작·조립·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.
- (개선)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.

③ 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)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

- (현황)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(1차 2백만원, 2차 1.5백만원)가 유사 인증에 비해서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.
- * 교통 및 물류 신기술 인증의 경우, 1차, 2차 심사수수료 각 1백만원 수준
- (개선)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인하(1·2차 각 1,000천원)한다.

④ (인천공항공사)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

- (현황) 이용객이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,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갖지 못했다.
- (개선) '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'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⑤ (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)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

- (현황)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.
- (개선) 수검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⑥ (주택도시보증공사)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

- (현황) 전세보증금반환보증*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, 약관이 어려운 용어, 복잡한 상품구조,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.

* 전세계약 해지·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

- (개선)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.

⑦ (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)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

- (현황)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.
- (개선)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.

⑧ (한국도로공사)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1/2 감축

- (현황)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(전년도 임대료 × 최근 5개년 GDP증가율)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.
- (개선)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“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,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”면서,

- “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 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채빈 사무관(☎ 044-201-48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공공기관별 규제입증책임제 담당자

연번	기관명	주요과제	담당자	연락처
①	한국국토정보공사	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	이태경 과장	063-713-1096
②	한국교통안전공단	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	최근수 과장	054-459-7123
③	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	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	이강준 연구원	031-389-6475
④	인천공항공사	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	이성규 사원	032-741-6747
⑤	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	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	정지연 과장	070-5050-4679
⑥	주택도시보증공사	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	김대열 차장	051-955-6857
⑦	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	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	김지현 차장	064-797-5411
⑧	한국도로공사	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1/2 감축	안세열 차장	054-811-1911
⑨	한국토지주택공사	토지 매매계약 절차 개선	문양선 차장	055-922-4504
⑩	한국부동산원	감정평가법인 등 선정기준 완화	정회곤 대리	053-663-8424
⑪	국토안전관리원	입찰절차 참여 편의 제고	정재연 차장	055-771-4637
⑫	한국철도공사	영업연체료 산정기준 개선	안현민 대리	042-615-3477
⑬	에스알	광고영업 계약기간 제한 완화	이택선 대리	02-6484-4641
⑭	국가철도공단	사업자 선정기준 개선	정재우 차장	042-607-3173
⑮	한국공항공사	민원서류 보완기간 확대	조재훈 차장	02-2660-2279

*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일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